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0. 4.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발의(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제2742호	'08. 11. 28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2009. 12. 11
"	한선교의원 등 11인	제4932호	'09. 5. 26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2009. 9. 24
"	전병헌의원 등 13인	제8615호	'10. 4. 13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2010. 4. 26)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게임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1)참고로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 개정 사항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정부와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의무가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어 국내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베테성 게임물을 포함한 게임물의 일부 운영방식 등이 사행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획득을 위하여 한 불법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개정안은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과 불법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추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개별 게임에 맞는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문화부장관은 필요시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인 이용자의 친권자 등이 요청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임이용 내역 정보를 해당 친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 다.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9호 신설)
-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2의2, 안 제38조제8항 신설)

마.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안 제46조제3의2호 신설)

마.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단서조항 신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보고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이용자의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이하 “예방 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여 예방 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 조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방 조치 등을 평가하는 경우 청소년, 학부모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의4(게임이용 정보의 제공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인 이용자의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게임이용 정보를 해당 법정대리

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지나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게임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을”을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등급분류업무의”를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의”로 한다.

제2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가치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2. 게임물의 사행행위예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제3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3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

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8조제7항에”를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로 한다.

3의2. 제32조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제4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신 설></p>	<p>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보고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이용자의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이하 “예방 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여 예방 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 예방 조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방 조치 등을 평가하는 경우 청소년, 학부모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신 설>

제12조의4(게임이용 정보의 제공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인 이용자의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게임이용 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지나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게임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략)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신설>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등급분류) ①-----

-----.

1.~3. (현행과 같음)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
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
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
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
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
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의----

②~⑤ (생략)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략)

<신설>

3.~ 8. (생략)

제31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1.2. (현행과 같음)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 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가치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8. (현행과 같음)

제31조(사후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③~④ (생략)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7. (생략)

<신설>

②(생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⑥(생략)

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1.~7. (현행과 같음)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②(현행과 같음)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⑥(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7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 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 설>

⑧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생략)

<신 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

-----,
-----.

- 1.~3. (현행과 같음)

3의2. 제32조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

4.5. (생략)

6. 제38조제7항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4.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47조(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